

일반적으로 미국에 밀입국한 뒤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에서 1년 미만이면 3년간 입국이 거절되며, 1년 이상이면 10년간 입국이 거절된다. 불법체류 구제안 조항의 혜택을 받지 않는 이상 밀입국한 사람들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거나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가족초청을 통하여 이들의 신분을 합법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오직 시민권자인 직계가족이 가족 초청 이민 신청서 (I-130)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신분을 합법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가족을 해외에 있는 주미 대사관으로 보내 인터뷰를 통해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 금지 면제 (Waiver of Inadmissibility)를 신청하는 것



**이동찬**

이민 변호사

년 3월 4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국무부에서 이민비자 신청자의 인터뷰 날짜를 정하기 위해 액션을 취한 날짜가 올해 1월 2일이거나 그

과 함께 지내다가 승인된 면제 서류를 가지고 한국으로 가서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하고 이민비자를 받으면 미국으로 합법 입국할 수 있다.

이 법안의 특이한 점은 추방 소송 중인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나마 입국 금지 면제 신청의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추방 소송이 취소되었거나, 법원 출두 명령이 취소되었거나, 또는 종료되었던 추방소송이 가진 출국을 허가하기 위해 다시 열리는 상황이면 미국내에서 입국 금지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안보부는 3월 4일부터 시행하는 미국내 신청 가능한 입국 금지 면제 조항이 이산

## 시민권자 직계가족의 밀입국 불법체류자를 위한 입국 금지 면제 조항

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민비자 신청자의 입국 금지 면제를 해외에서 이민비자 인터뷰 후 에나 신청하도록 하여 입국 금지 면제가 승인될 때까지 해외에 체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민국에서 입국 금지 면제를 처리하는 기간이 1년 이상 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민비자 신청자와 미국에 사는 가족이 오랫동안 헤어져 있어야 하는 것에 있다. 게다가 사면신청 승인이 부가 불확실하고 행여 거절 당하게 되면 3년, 길게는 10년까지 입국 거부를 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 동안 비슷한 처지의 시민권자 직계가족들은 불법체류자가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다해도 사면신청을 꺼려하였다.

그런데 앞으로 시민권자 직계가족들의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 금지 면제(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를 미국내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되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 2013

이후라면 미국내에서 입국 금지 면제 신청을 하도록 허용토록 하여 기존의 법과 큰 차이가 있다.

이 때 인터뷰 날짜가 언제 인가는 입국 금지 면제 신청 자격과 무관하다. 또한 국무부가 1월 2일 이전에 액션을 취해 이민비자 인터뷰 날짜를 발표하여 미국에서 입국 금지 면제 신청을 못하게 되었어도 예외는 있다. 국무부에서 이전의 청원서를 무효화하여 새로운 직계가족 초청 청원서를 접수하게 되었거나 이민비자 신청자를 위해 다른 직계가족이 가족 초청 청원서를 접수 하여서 새로운 이민비자 케이스가 생성되면 미국내에서 입국 금지 면제를 받고 해외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이민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라면 일단 I-130 가족 초청 이민 청원서를 승인 받고 입국 금지 면제부터 신청하기를 권장한다. 면제가 승인될 때까지 미국에서 가족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민국이 승인한 입국 금지 면제조항을 통해 기타의 결격사유가 없다면 국무부의 영사들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위한 이민비자를 발행하는데 더 이상의 지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이 조항의 주목적이다.

새로운 법에 따라 영주권 신청과 입국 금지 면제를 신청하실 수 있는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늘어나 이산가족의 걱정이 더 커지지는 않으리라 기대해본다. 그 동안 신분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직계가족 (21세 이상의 자녀, 배우자)이 시민권을 취득하였다면 올해 3월 4일부터 발효하는 이 법안을 잘 활용하여 하루 빨리 입국 금지 면제를 신청하고 다시 미국으로 합법 입국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개인별로 다른 사정과 예외가 있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13)291-9980.